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6. . . (제 회)	

국무회의 규정 일부 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윤호중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무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정부조직법」의 개정으로 통계청 및 특허청이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격상됨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 및 지식재산처장의 국무회의 배석 근거를 명문화 하고, 지방정부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,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및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을 국무회의에 상시 배석하도록 하며,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배석자가 국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국가데이터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6. 30. ~ 7. 3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국무회의의 규정 일부개정령안

국무회의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본문 중 “식품의약품안전처장”을 “식품의약품안전처장, 국가데이터처장, 지식재산처장”으로, “통상교섭본부장 및 서울특별시장”을 “통상교섭본부장, 서울특별시장,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182조제1항제1호·제3호에 해당하는 구성원으로 설립된 전국적 협의체의 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”를 “중앙행정기관인 청(廳)의 장 및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석자로 하여금 국무에 관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배석 등) ① 국무회의에는 대통령비서실장, 국가안보실장,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, 국무조 정실장, 인사혁신처장, 법제처 장, <u>식품의약품안전처장</u> , 공정 거래위원회위원장, 금융위원회 위원장, 과학기술혁신본부장, <u>통상교섭본부장 및 서울특별시</u> <u>장이 배석한다. 다만, 의장이 필</u> <u>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</u> <u>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</u> <u>하게 할 수 있다.</u>	제8조(배석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식품의약품안전처장, 국가데</u> <u>이터처장, 지식재산처장</u> ----- ----- <u>통상교섭본부장, 서울특별시장,</u> <u>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「지</u> <u>방자치법」 제182조제1항제1호</u> <u>· 제3호에 해당하는 구성원으</u> <u>로 설립된 전국적 협의체의 장-</u> --. --- <u>중앙행정기관인 청(廳)</u> <u>의 장 및 중요 직위에 있는 공</u> <u>무원을 배석하게 하거나 관계</u> <u>전문가를 참석하게 ---.</u>
② <u>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</u> <u>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인 청(廳)</u> <u>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사무와</u> <u>관련하여 국무회의에 출석하여</u> <u>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</u> <u>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</u> <u>있다.</u>	② <u>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</u> <u>경우에는 배석자로 하여금 국무</u> <u>에 관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</u> <u>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을 수</u> <u>있다.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	
연 락 처	(02) 2100 - 4084